

보도시점 2025. 10. 1.(수) 12:00 / 배포 2025. 10. 1.(수) 08:30
< 10. 2.(목) 조간 >

메가MGC커피의 온라인 분야 신유형 불공정행위 제재

- 가맹점주에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전액 부담시키고,
카페 설비 구매를 강제하는 등 행위에 시정명령·과징금(약 23억 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메가MGC커피’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주)앤하우스(이하 ‘앤하우스’)가 가맹점주들에게 ①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동의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액 부담시킨 행위, ②제빙기·그라인더를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 ③판촉행사에 대해 적법하게 동의 받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22.92억 원)을 부과하였다.

①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전가) 앤하우스는 2016. 8. 19. 카카오톡 선물하기, 오픈마켓 등에서 판매되는 모바일상품권*을 도입·판매하면서, 동의나 사전 협의 없이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품권 수수료를 전액을 부담시켰다.

* 모바일상품권이란 일정금액 한도 내 또는 특정된 상품과 교환할 수 있는 전자형 상품권으로, 주로 카카오톡 선물하기와 오픈마켓(G마켓, 옥션, 11번가 등) 등에서 판매됨

모바일상품권 종류(예시)

	
금액형 모바일상품권	물품제공형 모바일상품권

앤하우스가 2020. 7. 24. 정보공개서상 관련 내용을 기재하기 전까지 가맹점주들은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전부 부담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정보공개서(영업 중의 부담 관련) 발췌

<2020. 7. 24. 등록본>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	...	...	...
판촉분담금	-	행사별로 분담 등	-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분담금	□□□	판매금액의 11%	익월 말일
교육훈련비	당사	교육시에 협의	교육 실시일 이전
...	...	...	...

그럼에도 앤하우스는 어떠한 동의나 사전 협의 없이 수수료 전액을 가맹점주들에게 부담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가맹점주들은 2018. 1월부터 2019. 12월*까지 확인된 기간만 모바일상품권 발행액(약 24억 9천만 원)의 약 11%에 해당하는 2억 76백만 원 수준의 수수료를 부담하였다.

* 단, 상품권 발행 초기인 2016. 8. ~ 2017. 12. 기간의 경우 앤하우스의 관련 자료 폐기·미보관으로 수수료 부담 내역 파악 불가

가맹점주 수수료 부담내역

구분	모바일상품권 발행액	가맹점주 부담 수수료
2018년	472,043,400원	53,648,852원
2019년	2,017,842,273원	221,962,798원
계	2,489,885,673원	275,611,650원

한편, 앤하우스는 가맹점주가 수수료를 지불한 모바일상품권 발행 사업자*로부터 유사 리베이트 형태로 모바일상품권 발행액의 1.1%를 지급받기로 약정을 체결하고, 해당 금액을 수취하였다.

* 가맹본부는 모바일상품권 발행 사업자와의 제휴계약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의 발행·유통·정산 등의 업무를 대행시킴

공정위는 앤하우스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고 동의·사전 협의도 없이 가맹점주에게 수수료를 모두 부담시킨 행위는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3.75억 원)을 부과하였다.

② (제빙기·그라인더 거래처 제한) 앤하우스는 2019. 12월부터 2025. 2월 까지 제빙기 2종 및 커피 그라인더를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가맹점주에게 해당 설비들을 오직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설비류(3종)		
		
<370kg급>	<500kg 급>	
□□□ 제빙기		△△△ 그라인더

앤하우스는 가맹계약 체결 시 필수품목을 자신으로부터 구매하지 않는 경우 원·부재료 등 상품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가맹계약에 포함하여 가맹점주에게 구입을 강제하였다.

가맹계약서(공급품 관련)
제24조 (영업의 표준화 및 취급 상품) ③ 가맹점사업자는 제2항과 동일한 취지로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에서 <u>지정거래처</u> 요구 품목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31조 (상품 공급의 제한 및 중단)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u>상품 등의 공급을 중단</u> 할 수 있다. ... 6. 가맹점사업자가 제24조(영업의 표준화 및 취급 상품) 제2항, 제3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제39조 (계약당사자의 일반 해지권)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u>해지</u> 할 수 있으며 ... 5. 가맹점사업자가 제24조(영업의 표준화 및 취급 상품) 제2항, 제3항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여 가맹본부가 공급하는 상품, 원부자재 이외의 상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그러나 해당 제빙기와 그라인더는 시중에서 동일한 제품을 더 저렴한 가격에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일반공산품으로,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 등을 위해 반드시 가맹본부로부터 구매할 필요가 있는 제품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앤하우스는 제빙기·그라인더를 각각 26% ~ 60%의 마진율로 가맹점주에게 공급하여 상당한 차액가맹금을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공정위는 앤하우스가 해당 제품들을 오직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는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19.17억 원)을 부과하였다.

③ (포괄적 판촉행사 동의) 앤하우스는 2022. 5월경 향후 1년 동안 실시할 비용 분담 판촉행사에 대해 가맹점주들로부터 일괄 동의를 받으면서, 동의서에 실시 예정인 개별 판촉행사의 ‘명칭 및 실시기간, 소요비용에 대한 가맹점사업자의 분담 비율 및 분담 한도’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았다.

앤하우스는 2022. 5월 당시 가맹점주로부터 아래 ‘연간 프로모션 동의서’를 수취하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행사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향후 1년간의 판촉행사에 대해 일괄적으로 동의를 받았다. 가맹점주로서는 동의서의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동의 기간 또한 길어서 어느 시기에 어떤 판촉행사가 실시되는지, 실시 횟수는 몇 회인지 등 개별 판촉행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예상할 수 없었다.

연간 프로모션 동의서(발췌)

2. 배달앱(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쿠폰할인 프로모션 등에 대해 본사와 가맹점은 50:50으로 분담하며, 배달앱 유통 채널사와 협의하여 가맹점 분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신제품 및 기존 제품대상 단품 및 세트메뉴 구성을 통한 할인행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판매가의 최대 1,000원 할인 또는 최대 20% 선에서 할인폭을 정하고 이를 본사와 가맹점이 50:50으로 분담하는 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동의합니다. ...

위 동의서에 근거하여 앤하우스는 2022. 7. 7.부터 2023. 12. 30.까지 약 1년 6개월의 기간 동안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판촉행사를 개별적 동의 없이 총 120회 실시하였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형식으로 동의서를 받는 경우 가맹점주들이 개별 판촉행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예상할 수 없고 이는 통상적인 예측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판촉행사에 대한 적법한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가맹사업법 제12조의6 제1항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최근 급격히 성장하는 온라인 시장의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동의나 사전 협의 없이 가맹점주에게 전가한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향후 가맹분야의 투명한 거래관행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장기간의 비용 부담 판촉행사에 대해 가맹점주로부터 단순히 포괄적 동의만 받아 두고 개별 판촉행사를 가맹본부가 자의적으로 실시하는 행위와, 가맹점주가 굳이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하지 않아도 되는 설비를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유도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번 제재는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중 외식업종 분야에서 역대 최대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로, 공정위는 가맹점주 권익 보호를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강력히 제재한다는 확고한 법 집행 의지를 분명히 하였다.

향후 공정위는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가맹분야에서 경제적 약자인 가맹점주가 대등한 지위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히 조치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감으로써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생계와 지역경제의 활력, 나아가 국민 생활 전반의 지속적인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노력할 계획이다.

<참고 1> 이 사건 관련 법령

담당 부서	기업거래결합심사국 가맹거래조사팀	책임자	과 장	박진석 (044-200-4620)
		담당자	조사관	윤두호 (044-200-4618)
			조사관	안성현 (044-200-4623)



가. 거래상 지위 남용

법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2. (생략)
3.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 6. (생략)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시행령 제13조(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또는 기준) ① 법 제1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법 시행령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또는 기준(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1. ~ 2. (생략)
3.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사실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 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생략)

나. 부당한 강요 :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다 ~ 마. (생략)

바. 불이익 제공 :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나.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

법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생략)
2.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3. ~ 6. (생략)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시행령 제13조(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또는 기준) ① 법 제1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법 시행령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또는 기준(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1. (생략)
2. 구속조건부 거래

가. (생략)

나. 거래상대방의 구속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매·판매 또는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를 포함한 다)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가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 (2)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 (3)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

다. 판촉행사 사전 동의 의무 위반

법 제12조의6(광고·판촉행사의 실시 및 집행 내역 통보)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결한 광고·판촉행사의 약정에 따라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 비용 부담에 관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판촉행사의 경우에는 해당 판촉행사의 비용 부담에 동의한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

법 시행령 제13조의5(광고·판촉행사의 실시 등) ① 가맹본부는 법 제12조의6 제1항에 따라 광고·판촉행사의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문서, 내용증명우편,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또는 판매시점 관리 시스템(POS) 등을 통해 동의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법 제12조의6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광고의 경우: 100분의 50
2. 판촉행사의 경우: 100분의 70

③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2조의6 제1항 본문에 따른 광고·판촉행사의 약정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가맹계약과 별도로 체결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체결하는 광고·판촉행사의 약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돼야 한다.

1. 광고나 판촉행사의 명칭 및 실시기간
2. 광고나 판촉행사의 소요 비용에 대한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비율 및 부담 한도